

[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1. 계약기간

대여품목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,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와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을 하기 위함이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1) 기관의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
2) 장기요양등급외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3)급여비용 본인부담률

일반 대상자	감경		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
	보험료 순위 25% 이하	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 이하		
15%	6%	9%	6%	면제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

2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질병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-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변경하거나, 입원, 입소 또는 사망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
-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⑤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.집기 등의 훼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5. 계약의 해지

1) 계약해지 요건

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판매 또는 대여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
- ④ 기타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)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③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④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때

3) 계약해지

- ①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기관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-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